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31 선고 2024가단503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암

담당변호사 추상욱

변론 종결 2024. 9. 5.

판결 선고 2024. 10. 31.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3. 10.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7. 접수 제814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B이 2023. 10. 18.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였다.

1	2013.10.30.	65,600,000원	2013. 10. 30.2014. 10. 29.(2023. 10. 20. 까지로 변경)	2023. 12. 15.	54,306,197원
2	2014.2.4.	104,000,000원	2014. 2. 4.2015. 2. 3.(2024. 1. 26. 까지로 변경)	2023. 12. 15.	98,016,895원
3	2016.3.11.	72,000,000원	2016. 3. 11.2017. 3. 10.(2024. 2. 29. 까지로 변경)	2024. 3. 5.	73,223,564원
합계	225,546,656원				

나.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법적절차비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0. 17.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8145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비록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23. 12. 15. 및

2024. 3. 5.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13. 10. 30., 2014. 2. 4. 및 2016. 3. 1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여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바로 다음날 B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23. 12. 15. 및 2024. 3. 5. 각 원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

3. 사해행위의 성립

갑 6, 8, 10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사단법인 C이 제출한 문서 포함)를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전인 2023. 10. 15.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D)을 폐업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B은 가액이 대략 470,552,800원 정도인 이 사건 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약 150,400,000원과 F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약 80,000,000원 이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근저당권자인 G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230,000,000원, H카드에 대한 현금대출채무 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I에 대한 7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사해의사

가. 피고의 주장

2023. 3.경 J조합의 자산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대한 위험 신호가 높아져 예금자들의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자, K 중앙회는 2023. 4. 4.경 피고에게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신용대출 고객들에게 대출 상환 혹은 담보 제공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B로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2,400만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고, B의 예금액 600만 원을 더하여 B의 기존의 신용대출 3,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선의에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고, 피고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한편,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추정을 깨뜨리고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금융기관은 대출 전에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등도 확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 당시 B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수영

별지